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수신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경유)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협조 요청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왔으나, 최근 일부 회원사에서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원금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사업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류 접수 사례>

#### ■ 타 사업장용 신청서 사용

- 사업장 특정 정보가 포함된 QR코드 삽입 신청서를 복사하여 사용함에 따라 타사업장 신청서로 인식되어 처리

#### ■ 필수 구비서류 누락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지원요건확인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별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 구비 서류 누락

#### ■ 근로복지공단 관할 구분 없이 일괄 신청서 제출

- 사업장별로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나, 한 개의 지사에 모든 사업장 신청서 제출

#### ■ 전자신고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팩스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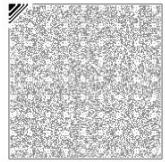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등의 경우에만 팩스 등 신청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팩스 신청

3. 귀 협회 회원사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제출 업무가 고객인 영세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회원사의 오류 제출로 인해 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사업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에 따라,

- ①QR코드가 포함된 신청서를 복사하여 사용하지 않고, ②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③필수 구비서류\* 누락없이 제출하며, ④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대리인 선임 신고 후 토탈서비스(total.kcomwell.or.kr)에서 전자신고하는 등 오류 접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구비서류는 불임 서식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http://www.jobfunds.or.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식 일체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주무관

김동주

행정사무관

천춘희

일자리안정자 전결 2020. 4. 8.

금지원추진단 팀장  
곽희경

협조자

시행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2020. 4. 8.)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http://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787 팩스번호 044-862-7617 / [stat4039@korea.kr](mailto:stat4039@korea.kr) / 대국민 공개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